

## 고유가·고물가에 하반기 LNG·LPG 할당관세 0%

### [관세 이슈 체크]

농산물 22개 품목 할당관세 연장·확대 및  
식품원료 집중관리품목으로 지정 (11p)

### [이주의 초점]

반도체 호황에 ICT 수출 신기록... 3개월 연속  
400억달러 돌파 (4p)

### [위클리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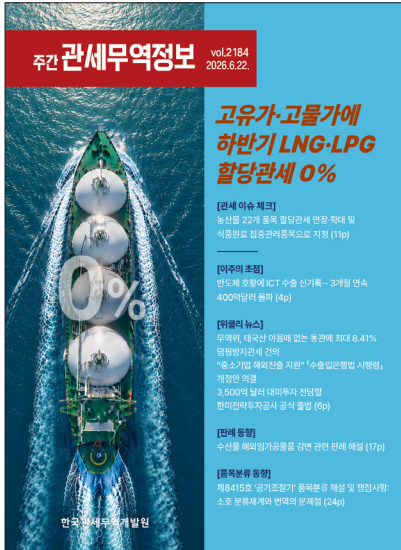
무역위,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최대 8.41%  
덤핑방지관세 건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3,500억 달러 대미투자 전담할  
한미전략투자공사 공식 출범 (6p)

### [판례 동향]

수산물 해외임가공물품 감면 관련 판례 해설 (17p)

### [품목분류 동향]

제8415호 '공기조절기' 품목분류 해설 및 쟁점사항:  
소호 분류체계와 번역의 문제점 (24p)



※ AI 생성 이미지

발행인 백형민

편집인 남성훈

총괄 김민정

취재 김성은 ray1023@kctdi.or.kr  
서준식 sjs1216@kctdi.or.kr

마케팅 김진우 kjw@kctdi.or.kr

디자인 경성문화사

발행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행일 2026년 6월 22일(통권 제2184호)

I S S N 2799-7251

e-ISSN 2799-726X

등록번호 서울 다07117(2005.5.20.)

주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22 6층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지식사업실

홈페이지 www.kctdi.or.kr

S N S blog.naver.com/kctdi1964

www.instagram.com/kctdi\_library

본지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C O N T E N T S



<알립니다>

통권 제2185호는 7월 6일 발행됩니다.

▲6월 29일 : 휴간, ▲7월 6일 : 제2185호, ▲7월 13일 : 제2186호

---

## 이주의 초점

- 04** 반도체 호황에 ICT 수출 신기록...  
3개월 연속 400억달러 돌파

---

## 관세행정실무해설

- 15** 질의응답사례  
삼푸바의 HS Code

---

## 06 Weekly News

---

## 판례동향

- 17** 관세판례해설  
수산물 해외임가공물품 감면 관련 판례 해설

---

## 관세 이슈 체크

- 11** 고유가·고물가에 하반기 LNG·LPG  
할당관세 0%

---

## 품목분류동향

- 24** 품목분류해설  
제8415호 품목분류 해설 및 쟁점사항 연구
- 41** 세번 바로잡기  
'제0307호vs.제0309호' 조개관자의 HS Code
-

## 반도체 호황에 ICT 수출 신기록... 3개월 연속 400억달러 돌파

### AI 서버용 저장장치 등 반도체 수요 급증에 역대 최고치 경신

반도체와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중심으로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중국과 미국, 베트남 등 주요 시장에서 수출이 확대된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도 증가하며 ICT 산업 전반의 성장 흐름이 이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부가 6월 15일 발표한 '2026년 5월 ICT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5월 ICT 수출은 477억 9,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28.9% 증가했다. 이는 월간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이며, 지난 3월 이후 3개월 연속 400억달러를 넘어섰다. ICT 수출은 국가 전체 수출의 54.5%를 차지하며 우리 경제의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ICT 수입은 157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6.0% 증가했으며, ICT 무역수지는 320억 9,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ICT 무역수지가 300억달러를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 반도체 수출 371.6억달러... 역대 최고 실적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전체 ICT 수출액의 약 77.8%를 차지하며 전체 수출 증가를 주도했다. 5월 반도체 수출은 371억 6,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69.2% 증가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수출은 321억 4,000만달러로 254.9% 증가했다. 메모리 반도체는 전체 반도체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시스템 반도체와 함께 반도체 수출 확대에 기여했다.

#### ● 월별 주요 품목별 수출 추이 ●

구분	2025	6	7	8	9	10	11	12	2026.1	2	3	4	5
반도체	138	149.7	147.1	151.0	166.3	157.1	172.7	207.7	205.5	251.5	328.4	319.1	371.6
디스플레이	15.3	12.9	17.6	18.2	19.2	16.4	16.0	16.6	15.0	13.6	14.9	14.4	15.7
휴대폰	10.5	7.9	9.5	13.3	14.8	16.1	14.9	14.0	17.6	12.4	15.4	13.6	12.2
컴퓨터 및 주변기기	12.0	14.5	10.9	13.3	14.5	11.1	15.1	22.0	17.0	27.2	35.9	42.6	43.3

단위: 억달러(출처: 산업통상부)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은 43억 3,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59.6% 증가했다. 특히 AI 서버용 반도체 기반 저장장치(SSD) 수출은 39억 7,000만달러를 기록하며 4개월 연속 역대 최고 실적을 이어갔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는 반도체에 이어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품목으로 나타났다.

휴대폰 수출(12억 2,000만달러)은 전년 동월 대비 15.9% 증가했는데, 휴대폰 완제품 수출은 감소했지만 휴대폰 부품 수출이 증가(15.7%)하면서 전체 수출은 증가세를 보였다.

디스플레이 수출은 15억 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8% 증가해 ICT 주요 품목 가운데 비교적 증가세가 완만했지만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됐다.

■ 미국·중국·베트남 등 주요 시장에서 반도체 중심의 수출 증가

지역별 수출 동향을 살펴보면 미국, 중국, 베트남, 대만 등 주요 시장에서 모두 두 자릿수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며 한국 ICT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큰 수출 시장인 중국(홍콩 포함)으로의 ICT 수출은 195억 1,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57.3% 증가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ICT 수출의 40.8%를 차지하는 규모다. 반도체 수출이 171억 7,000만달러로 198.3% 증가하며 전체 실적을 견인했고, 휴대폰과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도 각각 49.8%, 120.8% 증가했다. 대중 수출은 지난해 8월 이후 10개월 연속 증가세다.

미국 시장은 더욱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대미 ICT 수출은 81억 1,000만달러로 254.3% 증가했는데 주요 수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미국 내 AI 데이터센터 및 클라우드 인프라 확대에 따라 반도체 수출(46억 8,000만달러)이 520.2% 급증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대미 수출은 올해 2월 이후 60억달러를 넘어선 뒤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AI 투자 확대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베트남 수출도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5월 수출액은 67억 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90.8% 증가했으며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대만 역시 AI 반도체 산업 성장의 수혜를 받으며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 대만 수출은 57억 4,000만달러로 95.5% 증가했으며, 그중 반도체가 93.9% 증가해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 특히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은 614.4% 급증하며 AI 서버와 고성능 컴퓨터 시장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를 반영했다.

유럽연합(EU) 수출은 17억달러(53.9%)로 반도체와 컴퓨터 및 주변기기, 휴대폰 수출이 고르게 증가했다. 인도는 반도체 중심의 수요 확대에 힘입어 56.0%(7억 6,000만달러) 증가했고, 일본 수출도 반도체와 휴대폰 수출 증가에 따라 33.2%(4억 5,000만달러) 성장했다.

● 2026년 5월 ICT 산업 주요 지역·품목별 수입 ●

구분	전자부품	컴퓨터 및 주변기기	ICT 응용기반 기기	전체
전체	103.6(53.1)	15.9(15.5)	24.9(11.1)	157.0(36.0)
중국(홍콩 포함)	17.9(△24.1)	5.4(△5.8)	10.8(15.9)	39.1(△8.5)
대만	23.9(20.9)	1.3(46.8)	0.3(50.9)	25.7(22.8)
일본	10.3(50.6)	0.3(18.2)	2.0(10.4)	12.8(40.6)
베트남	6.3(19.9)	3.2(46.0)	1.3(0.2)	15.1(13.2)
미국	2.6(△19.5)	2.0(187.4)	3.4(13.3)	8.8(12.6)

단위: 억달러, %: 전년 동월 대비(출처: 산업통상부)

한편, 5월 중소·중견기업의 ICT 수출도 53억 2,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9% 증가했다. 산업부는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ICT 품목의 수출 증가와 함께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확대가 전체 ICT 수출 실적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 서준식 기자 |

※ 주간 관세무역정보 '위클리뉴스' 코너에서는 관세무역 관련 주요 뉴스를 요약 정리해 전해드립니다. 기사 전문 및 더 자세하고 다양한 관세무역 뉴스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www.kctdi.or.kr\)](http://www.kctdi.or.kr) > 관세무역동향에서 매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우편 이어 일반수입 화물까지··· 컨테이너 화물도 마약 N차 검사

관세청이 국제우편에 이어 일반수입 화물까지 마약검사 'N차 저지선'을 확대한다. 대형 컨테이너와 일반수입 화물을 통한 마약 은닉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공항만에 마약전담 특별검사팀을 신설하고, 입항부터 일반 수입검사까지 3중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관세청은 6월 17일 부산에서 주요 공항만 일반수입 화물 마약전담 특별검사팀을 발족하고, 일반수입 화물에 대한 마약검사 N차 저지선을 전면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적용되는 일반수입 화물 마약 검사체계는 ▲(1차) 입항 후 즉시검사, ▲(2차) 마약특별검사팀 검사, ▲(3차) 일반 수입검사로 이어진다. 기존에는 마약 적발 빈도가 높은 특송화물, 우편, 여행자 통관 분야를 중심으로 검사가 강화돼 왔지만, 앞으로는 일반수입 화물까지 별도 전담 검사망을 적용한다.

관세청은 컨테이너 등 일반수입 화물의 경우 개인 화물보다 부피가 커 소량의 마약을 은닉할 경우 적발하기 쉽지 않고 대형화물 특성상 한 번 밀반입되면 대규모 마약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국경 단계에서의 사전 차단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주요 공항만 일반수입 화물 마약전담 특별 검사팀 발대식에서 검사현장을 살피는 이종욱 관세청장(출처: 관세청)

마약특별검사팀은 화물 반입이 많은 부산 북항·신항, 인천공항, 인천항, 평택 등 5개 공항만에 우선 배치된다. 각 팀은 마약 우범정보를 자체 분석해 검사 대상을 선별하고, 컨테이너 엑스레이(X-ray) 검사와 개장검사, 과학검사장비 검사 등을 수행한다. 필요할 경우 의심 화물을 해체·절단해 확인하는 파괴검사도 과감히 실시할 방침이다.

관세청 통관국은 “지난 4월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한 다양한 반입경로별 N차 저지선 확대를 위해 최소 필요 정원 452명을 확보했으며, 상대적으로 검사 역량을 집중하기 어려웠던 일반화물 분야까지 감시단속망을 넓힐 수 있도록 전담조직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검사장비도 고도화한다. 관세청은 효율적인 마약 적발을 위해 기존 단방향 컨테이너 검색기보다 정밀도가 높은 투과·산란 방식의 신기술 검색기를 최초 도입해 운영에 들어갔다. 관세청은 국제우편과 일반수입 화물에 이어 특송화물과 여행자 분야에도 N차 저지선을 구축·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무역선에서 하선하는 선원과 항만 출입자를 대상으로도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한 2차 감시단속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화물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관세청은 국가정보원, 미국 마약단속국(DEA),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국내외 기관과 협업해 경유화물에 대한 정보분석과 불시 단속을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검사 강화로 정상적인 일반화물의 수입통관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세청은 정보 분석을 보다 정교화해 성실업체에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김성은 기자 |

## 무역위,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최대 8.41% 덤핑방지관세 건의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6월 18일 열린 제474차 무역위원회에서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조사 최종판정을 심의한 결과,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4.93~8.41%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태국산 제품의 덤핑 수출로 인해 국내 동종 산업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등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봤다. 조사대상 물품은 외경 66.68mm 이하, 두께 0.20mm 이상 2.50mm 이하의 정제 구리로 만든 이음매 없는 동관이다. 해당 제품은 에어컨·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공업용 열교환기, 냉난방 및 공조(HVAC, Heating Ventilation & Air Conditioning) 시스템 등에 널리 사용된다.

### ● 최종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수준 ●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최종덤핑방지관세율
태국	Hong Kong Hailiang Metal Trading Limited와 그 관계회사	4.93%
	Fine Metal Technologies Public Company Limited와 그 관계회사	8.41%
	그 밖의 공급자	4.93%

출처: 산업통상부

조사대상 공급자는 홍콩 하이량 금속상사(Hong Kong Hailiang Metal Trading Ltd.)와 파인 메탈 테크놀로지스(Fine Metal Technologies Public Company Ltd.)다. 무역위는 지난해 9월 조사를 개시한 뒤 올해 1월 예비판정을 내렸으며, 4월 공청회를 거쳐 이날 최종판정을 확정했다.

해당 제품에는 올해 3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3.64~8.41%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무역위는 이번 결과를 재정경제부에 건의하는 한편, 해당 정부와 이해관계인들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 서준식 기자 |

##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재정경제부는 6월 16일 국무회의에서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4일 시행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수출입은행의 투자 제도를 정비하고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의 간접투자 대상이 기존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에서 「벤처투자법」상 벤처투자조합과 「여성전문금융법」상 신기술투자조합까지 확대된다. 또한 투자기구별 집합투자재산의 25%로 제한됐던 투자금액 한도 규정이 삭제된다.

직접투자와 관련해서는 수익성 확보 기준을 구체화했다. 수출입은행이 직접투자를 할 경우 사업의 예상수익률이 수출입은행이 정한 기준수익률 이상이어야 하며, 해외공사 지분투자는 수익률 요건을 충족하는 동시에 공사 종료 후 5년 이내 순현금흐름이 0보다 큰 연도가 있어야 직접투자가 가능하다.

직접투자 시 적용되는 지분 취득 한도 규제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15%까지만 취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벤처기업법」상 벤처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재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수출입은행이 투자 기능을 확대하며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산업경쟁력 강화와 경제안보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 김성은 기자 |

## 해수부·해진공, 중소·연안선사 지원 확대... 6년간 1조 1,000억원 투입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제2차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2026~2031)’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해양금융 사각지대 해소와 중소·연안선사의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6월 16일 발표했다.

총 지원 규모는 2026년부터 2031년까지 6년간 1조 1,000억원으로, 2022년부터 추진된 1차 특별지원 프로그램(총 5,000억원) 대비 2배 이상 확대됐다. 지원 대상도 대폭 늘어난다. 기존 중소선사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예선업과 도선업이 새롭게 포함됐으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정책 지원이 중단돼 지원 공백을 겪는 신규 중견선사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금융 지원 조건 역시 개선된다. 선박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기존보다 20%p 상향해 최대 80%까지 적용하고, 대출이자 지원 대상 금액도 대출원금 기준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해운조합이나 예선조합 등을 통해 2척 이상의 선박을 공동 발주할 경우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조항을 새롭게 도입해 선박 현대화와 공동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제2차 중소기업 특별지원 프로그램은 한국해양진흥공사 홈페이지(www.kobc.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서준식 기자 |

## “3,500억달러 대미투자 전담” 한미전략투자공사 공식 출범

한·미 양국 간 전략적 투자 협력을 전담할 한미전략투자공사(KUIC, Korea-U.S. Strategic Investment Corporation)가 6월 18일 공식 출범했다.

한미전략투자공사는 지난해 11월 체결된 ‘한미 전략투자 양해각서(MOU)’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12일 국회에서 통과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한미전략투자법)」에 따라 설립됐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3월 「한미전략투자법」 통과 직후 이형일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위원회를 구성해 공사 정관, 조직 구성 등 설립 작업을 추진해 왔다. 설립위원회는 이날 법인 설립등기를 마치고 관련 업무를 신임 공사 사장에게 인계하며 설립 절차를 마무리했다.

공사는 앞으로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를 전담하며 양국 간 산업 협력 확대와 공급망 안정화, 전략산업 투자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조선·에너지 분야를 비롯해 인공지능(AI), 양자기술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 확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18일 열린 창립기념행사에 참석한 구윤철 부총리는 기념사에서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을 계기로 한·미 동맹이 경제와 안보를 넘어 첨단 전략산업까지 아우르는 더욱 견고한 파트너십으로 발전하게 됐다”며, “미국의 기술력과 시장, 한국의 제조혁신 역량을 결합해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함께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사는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단순한 자본 투자에 그치지 않고 양국 산업 생태계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며,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이 미국 제조업 재편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종원 한미전략투자공사 초대 사장은 “새로운 경제질서가 형성되는 전환기에 양국 간 투자 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전담기관으로 에너지·조선 등 전략산업 분야 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공사 출범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첨단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미 경제협력의 새로운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김성은 기자 |

## 한국·EU, 승객예약자료 협정 타결··· 아시아 최초 EU 항공사 승객 정보 확보

관세청이 유럽연합(EU)과 승객예약자료(PNR, Passenger Name Record) 입수 협정을 타결했다. 협정이 발효되면 EU 국적 항공사의 승객 및 수하물 정보를 사전에 확보할 수 있게 돼 마약·테러 등 초국가 범죄 대응 역량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6월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한·EU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언급한 바와 같이 ‘한·EU 승객예약자료 입수 협정’이 타결됐다고 전했다.

EU와 PNR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일부 국가에 한정돼 있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EU와 관련 협정을 체결하게 됐다.

PNR은 항공권 예약과 발권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로 발권일, 여행 경로, 동반 탑승자, 수하물 정보 등을 포함한다. 각국 세관과 국경관리기관은 이를 활용해 입국 전 우범 여행자를 선별하고 마약·테러 등 중대 범죄 위협을 사전에 분석한다.

현재 미국, EU, 호주, 일본 등 60여 개국이 PNR을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6년부터 국내 취항 항공사들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위협관리에 활용해 왔다. 그러나 EU는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별도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만 소속 항공사의 PNR 제공을 허용하고 있어 그동안 한국은 EU 국적 항공사 정보를 확보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관세청은 EU 집행위원회와 주한 EU 대사관 등과 협의를 지속한 끝에 지난해 협상 개시에 합의했다. 이후 수차례 협상을 거쳐 올해 4월 협정문에 합의했으며, 지난 6월 4일 비대면으로 열린 가서명식을 진행, 이번 협정이 국경 안보 강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성과라는 데 공감하고, 2027년 상반기 발효를 목표로 후속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협정이 정식 발효되면 관세청은 EU 국적 항공사의 PNR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여행자를 통한 마약·총기 등 위해물품 반입 위협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고 국경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김성은 기자 |



정지는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우)이 6월 4일 비대면으로 진행된 ‘한·EU PNR 입수 협정 가서명식’ 후 협정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출처: 관세청)

# 고유가·고물가에 하반기 LNG·LPG 할당관세 0%

## 농산물 22개 품목 할당관세 연장·확대 및 식품원료 집중관리품목으로 지정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과 물가 부담 확대에 대응해 올해 하반기 LNG·LPG 할당관세를 0%로 낮추고 농산물 22개 품목에 대한 관세 지원을 확대한다. 최근 수입물가와 생산자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에너지와 먹거리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재정경제부는 6월 18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제11차 회의를 열고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 하반기 할당관세 운용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중동전쟁이 시작된 이후 석유류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소비자물가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석유류 가격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올해 3월 9.9%, 4월 21.9%, 5월 24.2%를 기록했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같은 기간 각각 2.2%, 2.6%, 3.1%로 상승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제유가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에너지 분야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 LNG·LPG 관세 인하하고 발전용 LNG 개별소비세는 감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프로판·부탄),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 할당관세율 0%를 적용한다.

재경부에 따르면 해당 품목의 기본 관세율은 3%다. 당초 LNG는 올해 3분기 2%, 4분기 1%의 할당관세율을 적용할 예정이었고, LPG와 LPG 제조용 원유는 3·4분기 각각 1%의 할당관세율을 적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모두 0%로 조정하기로 했다.

발전용 LNG에 대한 개별소비세도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15% 감면하기로 했다. LPG 부탄에 적용 중인 유류세 탄력세율 25% 인하 조치는 당초 6월 30일까지였으나 7월 31일까지 한 달 연장한다.

### ● 하반기 에너지 분야 할당관세·유류세 운용방안 ●

구분	품목	기본관세율	현행	운용 방안	기대 효과
할당관세	LNG	3%	<sup>3Q</sup> 2% <sup>4Q</sup> 1%	<sup>3Q</sup> 0% <sup>4Q</sup> 0%	공공요금 (도시가스, 전기 등), 운송비 등 절감으로 물가안정에 기여
	LPG(프로판, 부탄) LPG 제조용 원유*	3%	<sup>3Q</sup> 1% <sup>4Q</sup> 1%	<sup>3Q</sup> 0% <sup>4Q</sup> 0%	
개별 소비세	발전용 LNG	개별소비세 감면 없음		15% 감면 (7~12월)	
	LPG 부탄	유류세 탄력세율(△25%) 6월 30일까지 적용		7월 31일까지 연장	

\* 물량: 16,500,000배럴(출처: 재정경제부)

정부는 도시가스와 전기 등 공공요금, 물류·운송비 등의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데 이번 조치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경부는 “에너지 가격 상승 등 대외 요인이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물가 안정과 서민 부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과일·식품원료 등 22개 품목 할당관세 지원

정부는 농산물 분야에서 총 22개 품목에 대해 하반기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바나나·파인애플·망고 등 과일 3종과 식품원료 10종 등 13개 품목은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식품원료 7종과 사료원료 2종 등 9개 품목은 신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 농산물 분야 할당관세 연장 및 신규 지원 ●

품목		기본관세율(%)	할당관세율(%)	적용기간	물량(톤)	
연장 (13개)	과일 (3개)	바나나·파인애플·망고	30	5	2.12.~8.15.	12만 9,000· 3만 3,500· 1만 8,500
	식품 원료 (10개)	계란가공품	8·27·30	0	1.1.~12.31.	8,000
		냉동과일(기타)	30	5		1만
		으깬 파인애플	45	15		8,000
		처리기타과일	45	15		7,500
		과일카테일	45·50	15·20		5,500
		사과농축액	45	15		3,000
		코코아 페이스트, 코코아버터, 코코아파우더	5	0		수입전량
해바라기씨유	5	0	1만			
신규 (9개)	식품 원료 (7개)	포도농축액	8	0	7.1.~12.31.	3,000
		기타과실주스	50	20		1만
		자몽·레몬농축액	30·50	0·20		1,000·7,500
		복숭아·파인애플주스	50	20		1,000·700
		맥아추출물	30	0		600
	사료원료 (2개)	팜박, 감자변성전분	2, 8	0	2만·1만 500	

출처: 재정경제부

연장 대상 식품원료에는 계란가공품, 냉동과일, 으깬 파인애플, 과일카테일, 사과농축액, 코코아 페이스트·버터·파우더, 해바라기씨유 등이 포함됐다.

신규 적용되는 식품원료는 포도농축액, 자몽·레몬농축액, 기타과실주스, 복숭아·파인애플주스, 맥아추출물이며, 사료원료는 팜박, 감자변성전분 등이다.

바나나·파인애플·망고의 할당관세 적용 기간은 오는 8월 15일까지로, 정부는 사과·배 등 국내 과일 출하 시기를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식품원료 17개 품목의 할당관세 적용기간은 12월 31일까지로, 정부는 이 17개 품목을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으로 지정해 세율 인하 효과가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통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 2026년도 긴급 할당관세 품목 ●

차수	품목명	세율(%)		물량(톤)	기간	비고
		기본	할당			
1차 (2.12.)	1 냉동고등어 (마리당 300~600g)	10	0	2만 5,000	2.12.~12.31.	연장
	2 바나나	30	5	12만 9,000	2.12.~6.30.	
	3 파인애플	30	5	3만 3,500	2.12.~6.30.	
	4 망고	30	5	1만 8,500	2.12.~6.30.	
2차 (5.29.)	1 닭고기	20~30	0	3만	5.29.~7.31.	
	2 돼지고기	25	0	1만 2,000	5.29.~12.31.	

출처: 재정경제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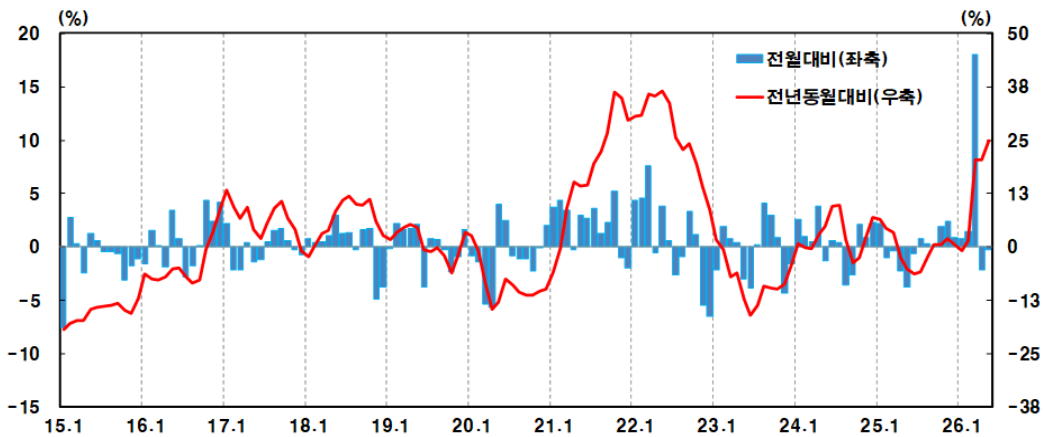
미·이란 종전 효과는 아직... 수입물가 상승 압력 이어져

에너지 가격 부담은 수입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은행이 6월 16일 발표한 ‘2026년 5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5월 수입물가지수는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0.3% 하락했으나 전년 동월 대비로는 24.8% 상승했다.

한국은행은 두바이유 월평균 가격이 4월 배럴당 105.70달러에서 5월 103.15달러로 2.4% 하락했지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61.9%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원재료 부문은 원유 등 광산품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1.0% 하락했으며, 중간재는 석탄·석유제품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1차 금속제품 가격 상승 영향으로 보합을 기록했다. 자본재와 소비재는 각각 전월 대비 0.3% 상승했다.

● 2026년 5월 수입물가지수 등락률 ●



출처: 한국은행

5월 계약통화 기준 수입물가 역시 전월 대비 0.5% 하락했지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17.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 단계의 물가 압력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6월 19일 발표한 ‘2026년 5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가 129.82(2020=100)로 전월 대비 0.8%, 전년 동월 대비 8.5% 상승했다고 밝혔다.

공산품은 화학제품(1.8%), 1차 금속제품(1.4%),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1.6%) 가격 상승으로 전월 대비 0.7% 올랐다.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은 산업용도시가스(10.3%)가 상승한 영향으로 0.5%, 서비스는 금융 및 보험서비스(8.3%)와 운송서비스(1.8%) 상승으로 1.2% 각각 상승했다.

물가 변동의 파급 과정을 보여주는 국내공급물가지수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며 전월 대비 보합을 기록했으나 전년 동월 대비로는 11.7% 상승했다. 국내 생산품의 가격 변동을 보여주는 총산출물가지수는 공산품과 서비스 가격 상승으로 전월 대비 1.2%, 전년 동월 대비 16.7% 상승했다.



바나나·망고·파인애플에 대한 할당관세가 8월 15일까지 연장된다(출처: AI 생성 이미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17일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올해 하반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 내외,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2% 중후반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중동 지역 원유 공급망 정상화와 국제유가 안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고유가 영향이 시차를 두고 다른 품목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18일 ‘2026년 농축산물 할당관세 통합 운영관리 분석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할당관세 운영 효율화 및 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4월 개정된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을 대상으로 수입부터 유통·판매까지 전 과정을 점검할 계획이다. aT는 오는 7월 ‘할당관세 운영관리 TF’를 발족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연내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재경부는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거쳐 이번 할당관세 조치를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김성은 기자 |



본 코너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 상담한 사례 중 주요 내용만 엄선해 제공합니다. 제공하는 사례는 법률적인 유권해석이 아니며, 민원인에게 참조의 편의상 제공하는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권한 있는 해석이 필요할 경우 서면으로 별도 질의하거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기 바랍니다.

관세청 기획조정관 납세자보호팀 고객지원센터

**품목분류 / 샴푸바의 HS Code**

**고체 타입의 샴푸 제품인 샴푸바의 HS Code는 어떻게 될까요?**

문의한 물품이 '두발용 제품류'의 '샴푸'에 해당된다면 제3305.10-0000호에 분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들을 분류한다. (1) 샴푸: 비누나 그 밖의 유기계면활성제를 함유하고 있는 것(제34류의 주 제1호 다목 참조)과, 그 밖의 샴푸·보조 의약품 성분이나 살균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치료나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샴푸도 이 호에 분류한다(제30류의 주 제1호 마목 참조). … <중략> … 두피 이외의 체모(體毛)에 바르는 조제품은 제외한다(제3307호)”고 설명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34류 주 제1호 다목에서 “비누나 그 밖의 유기계면활성제를 함유하는 것으로서 샴푸·치약·면도용 크림과 폼(foam)·목욕용 조제품(제3305호·제3306호·제3307호)의 것”을 제외하며, 제30류 주 제1호 마목에서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의 조제품(치료용이나 예방용을 포함한다)”을 제외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환급 / 해외 직구 물품 환급**

**해외 직접 구매(직구)한 물품이 하자 등으로 가격이 인하돼 환불받았다면 납부한 관세도 환급 대상에 해당되나요?**

실제지급금액의 오신고 및 변경 등으로 인해 과세가격 및 세액이 변경되는 경우 수입신고서 정정을 통해 차액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환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구매한 물품의 세액을 새로 산출하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가 승인되면 경정청구 승인내역 등의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오납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통관을 담당한 관세사나 특송업체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경정청구 심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2개월이며, 경정청구 및 환급은 통관지 세관 담당자가 개별 건의 사실관계 및 증빙서류 등을 심사해 개별 사안의 적정성을 검토해 결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가격의 정정 가능 여부 등 실무적인 문의사항은 통관지 세관 담당자에게서 확인받기 바랍니다.

참고로 물품의 일부를 정정하는 경우 그 일부에 해당하는 관세액만큼만 환급 가능하며, 일부 정정으로 물품 가액이 합산과세 금액을 넘지 않게 되더라도 수입 당시 관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과세된 것이기 때문에 전체 세액에 대해 환급은 불가합니다.

수입자가 직접 환급 신청하고자 할 때는 신고인(사용자)부호를 사전에 등록한 이후 다음 경로를 참고해 환급 신청을 진행하기 바랍니다.

**□ 신고인(사용자) 등록**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unipass.customs.go.kr)>고객센터>사용자등록에서 접수하기 바랍니다.

**□ 경정청구 신청 방법**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unipass.customs.go.kr)>전자신고>신고서 작성>수입통관>수입납세신고 정정 승인(신청)서를 작성하고, 인보이스 또는 구매내역서, 실제 지급자료, 운송장, 사유서 등을 첨부하기 바랍니다. 경정청구 접수 시 궁금한 사항은 관세청 기술지원센터(1544-1285)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 환급 신청 방법**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unipass.customs.go.kr)>전자신고>신고서 작성>환급(관세법/환급특례법)>환급 신청서(과오납/계약상이/멸실/변질/손상)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출 / 수출신고 사후 신청**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외국으로 반출한 경우에도 사후 수출신고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수출신고는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4조(신고의 시기)에 따라 수출하려는 자는 국내의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이미 반출이 된 경우에는 사후 수출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4조(신고의 시기)** 수출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별도로 정한 특수형태의 수출인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른다.

## 수산물 해외임가공물품 감면 관련 판례 해설

김민주 | 부산세관 심사총괄과(쟁송팀)

### 1. 들어가며

「관세법」상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제도는 국내에서 수출된 물품이 해외에서 단순 가공 또는 수리를 거쳐 다시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에, 일정 요건 하에서 관세 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다. 이는 국내 기업의 국제 분업 및 해외 가공거래 현실을 반영한 제도로써, 동일 물품에 대한 이중적인 관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를 가진다.

그러나 실제 실무에서는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의 동일성 인정 여부’를 둘러싸고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에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농·수산물과 같이 제조번호나 일련번호로 개별 식별이 어려운 물품의 경우, 동일성 판단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되면서 감면이 부인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부산고등법원에서는 냉동 수산물을 중국 현지에서 필렛(fillet) 형태로 임가공한 후 재수입한 사안에서, 관련 서류와 거래구조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호에서는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제도상 동일성 판단 기준에 관한 시사점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 2. 해외임가공물품 관세 관련 법령

#### ■ 「관세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 ② 제1항의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경감하지 아니한다.
2.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3. 보세가공 또는 장기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 ■ 「관세법 시행령」

**제119조(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액)** 법 제101조 제1항에 따라 경감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1조 제1항 제1호의 물품: 수입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2. 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물품: 가공·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다만, 수입물품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 기간(수입신고수리 후 1년으로 한정한다) 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수출물품의 수출신고가격
  - 나. 수출물품의 양륙항까지의 운임·보험료
  - 다. 가공 또는 수리 후 물품의 선적항에서 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 라. 가공 또는 수리의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 ■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 ① 법 제10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법 별표 관세율표 제85류 및 제90류 중 제900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란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 후 수입된 물품의 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수율·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 ■ 「관세법 시행규칙」

**제57조(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①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이하 이 조에서 ‘해외임가공’이라 한다)할 물품을 수출신고할 때 미리 해외임가공 후 수입될 예정임을 신고하고, 감면신청을 할 때 영 제112조 제1항 각호의 사항 외에 수출국 및 적출지와 감면받고자 하는 관세액을 기재한 신청서에 제조인·가공인 또는 수리인이 발급한 제조·가공 또는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당해 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물품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가공 또는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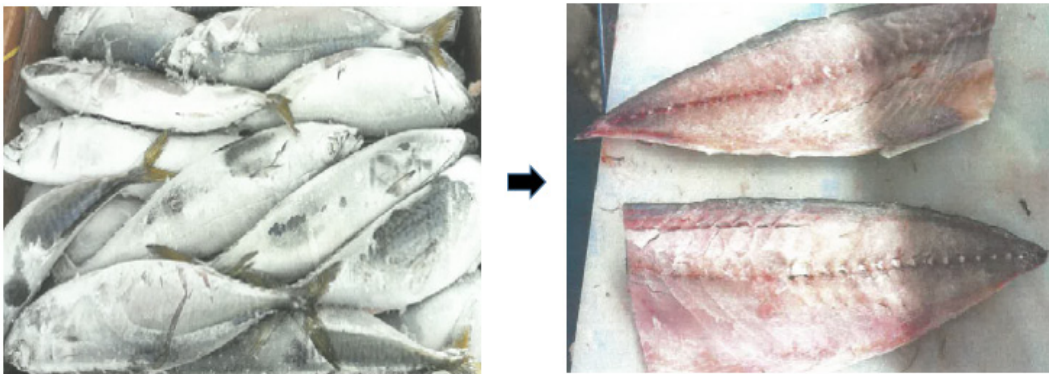
1. 원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2. 제조·가공 또는 수리에 의하여 부가 또는 환치된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3. 제조·가공 또는 수리에 의하여 소요된 비용
4. 제조·가공 또는 수리의 명세
5. 감면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6. 기타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수출한 물품으로 제조·가공 또는 수리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3. 판례 분석

#### 1) 사건 개요

원고는 국내산 수산물을 중국 소재 임가공업체에게 수출한 후, 현지에서 머리·내장·뼈를 제거하는 등의 가공을 거쳐 필렛 형태로 재수입했다. 원고는 해당 물품에 대해 「관세법」 제101조에 따른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을 신청했다.

#### ● 가공 전(좌) & 가공 후(우) ●



그러나 세관은 수출 당시 물품과 재수입 물품의 HSK 10단위가 상이하고, 농·수산물의 특성상 동일성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감면을 부인했다. 이에 원고는 감면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 2) 당사자들의 주장

본 사건의 핵심쟁점은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의 품목번호가 달라진 경우에도 제출된 자료만으로 양 물품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원고는 수출신고 단계부터 위탁가공 거래로 신고했고, 임가공업체가 작성한 가공일지, 상업송장, 위생증명서 등을 통해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의 연계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동일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과세관청은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의 품목번호가 다르고, 수산물의 특성상 물품 자체를 통해 동일성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제출된 서류는 형식상의 서류에 불과해 동일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활용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 3) 법원의 판단

부산고등법원은 과세관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우선, 관련 법리에 관해 구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의 내용을 실시한 후 “제품의 제작 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봐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해외임가공물품 감세 규정에 따라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법원은 ‘가공’이란, 원재료에 노력을 가해 원재료와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변경을 가하는 것이고, ‘수리’라 함은 물건의 용도에 따른 기능이 불완전한 경우 그 기능을 회복시켜 주는 것으로서 모두 그 전후에 걸쳐 기본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봤다.

법원이 수출물품과 수입물품 간 동일성을 인정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 ① 이 사건 임가공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임가공업체는 원고에게 냉동삼치 임가공작업 내역에 관한 가공일지를 보내주기로 돼 있었고
- ② 이 사건 수출물품은 2개의 컨테이너에 봉인·적재돼 선박으로 이 사건 임가공업체로 운송됐고, 이 과정에서 수출물품에 관해 선하증권이 발행됐는데 임가공업체가 작성한 가공일지에 해당 선하증권의 번호가 기재돼 있었으며,
- ③ 각 가공일지상의 원료투입량 합계가 이 사건 수출물품의 무게와 같고, 각 가공일지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법원은 이 사건 수입물품은 이 사건 임가공업체가 이 사건 수출물품의 일부에서 가공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것이다.

#### ● 부산고등법원 2022누23197 판결 ●

구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는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은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라 함은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 후 수입된 물품의 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을 말하지만,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

하지 아니하더라도 구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가공이라 함은 원재료에 노력을 가하여 원재료와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변경을 가하는 것이고, 수리라 함은 물건의 용도에 따른 기능이 불안정한 경우 그 기능을 회복시켜 주는 것으로서 모두 그 전후에 걸쳐 기본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6.12.23. 선고 86누272 판결 참조).

… <중략> …

이 사건 임가공업체는 이 사건 임가공계약에 따라 냉동삼치를 냉동삼치 필렛(fillet)으로 가공하였는데, 이는 식용소금을 제외한 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냉동삼치의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절단 등으로 가공한 것에 해당하여[구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 수출입 수산물 위생관리(2022.4.27. 해양수산부고시 제2022-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 제2조, 중국 세관은 이 사건 고시 제6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임가공업체에게 이 사건 수입물품에 관하여 위생증명서를 발급해 주었다(갑4호증의 4).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임가공업체가 이 사건 수출물품 중 일부에 한 가공은 원재료인 이 사건 수출물품에 노력을 가하여 원재료와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변경을 가하는 정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 사건 수입물품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음으로 법원은, 이 사건 임가공업체의 가공으로 인해 이 사건 수입물품이 이 사건 수출물품 중 일부와 동일성을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변경됐는지 여부도 함께 판단했다.

법원은 이 사건 임가공업체가 이 사건 임가공계약에 따라 냉동삼치를 냉동삼치 필렛으로 가공했는데, 이때 식용소금을 제외한 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냉동삼치의 원형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절단 가공한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 결과 법원은 이 사건 임가공업체가 이 사건 수출물품 중 일부에 한 가공은, 원재료인 이 사건 수출물품에 노력을 가해 원재료와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변경을 가하는 정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과세관청이 이 사건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 4. 시사점

첫째,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에서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의 동일성은 구체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판단될 필요가 있다. 부산고등법원 판결은 수입물품이 수출물품에서 가공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가공일지, 선하증권 번호, 컨테이너 번호, 투입량과 생산량 등을 살펴봤다. 특히 가공일지와 원재료 투입량 합계가 수출물품의 무게와 같고, 생산량이 수입물품의 무게와 대응된다는 사정을 고려했다. 따라서 해외임가공물품 감면 여부를 판단할 때는 수출물품이 어떤 경로로 임가공업체에 반입됐고, 그 물품이 어떤 공정을 거쳐 수입물품으로 생산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하게 검토돼야 한다.

둘째, 수산물과 같이 개별 식별이 어려운 물품의 경우에는 가공 전후 물량이 대응되는지, 그리고 거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돼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 사건 판결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자료는 가공일지였다. 가공일지는 수출물품의 투입과 수입물품의 생산을 연결하는 자료로 기능했으며, 선하증권 번호, 컨테이너 번호, 위생증명서, 상업송장 등 다른 자료가 함께 제출됐기에 법원에서는 수출물품과 수입물품 사이에 연관관계를 인정한 것이다. 수산물은 제조번호나 일련번호만으로는 개별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필렛 가공과 같이 형태가 변형될 때는 물품 자체만으로 동일성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면, 해외임가공 거래를 하는 업체는 수출 단계부터 수입 단계까지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원재료 투입량, 제품 생산량, 작업 일자, 컨테이너 번호, 선하증권 번호 등이 서로 상충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도 해외임가공물품 감면과 관련한 동일성 판단기준을 보다 구체적이고 예측할 수 있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제도는 실무상 활용도가 높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의 동일성을 어느 정도의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지에 관해 지속적으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품목번호가 달라지는 물품이나 농·수산물처럼 개별 식별이 어려운 물품의 경우,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판단 차이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감면 신청 단계에서 납세자가 준비해야 할 자료의 범위와 기준을 보다 명확히 안내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가공일지에 기재돼야 할 사항, 원재료 투입량과 생산량의 대응 관계 확인 방법, 선하증권·컨테이너 번호 등 운송 자료와의 연계 방법, 위생증명서 등 공적 서류의 활용 범위 등을 구체화한다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결국 해당 판결은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에서 동일성 판단이 실제 거래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와 물량 흐름을 중심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 5. 맺음말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제도는 국내에서 수출한 물품이 해외에서 제조·가공 또는 수리된 후 다시 수입되는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관세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국제적 분업 구조 속에서 이뤄지는 해외 가공거래를 반영한 제도라는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의 동일성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납세자는 감면 적용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고, 과세관청 역시 개별 사안별로 동일한 쟁점을 반복적으로 심사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 특히 수산물과 같이 개별 식별이 어려운 물품의 경우에 품목번호, 물품의 외형, 서류의 기재내용, 물량 대응관계 등의 기준이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는다면, 이를

둘러싼 분쟁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제도의 운영방식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감면 요건 자체를 완화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납세자가 어떤 자료를 갖춰야 동일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실무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가공일자, 선하증권, 컨테이너 번호, 원재료 투입량, 제품 생산량, 위생증명서 등 어떤 자료가 동일성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되는지, 그리고 그 자료들 사이에 어느 정도의 대응관계가 요구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안내한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동시에 세관 입장에서도 감면 심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반복적인 불복과 소송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결국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제도는 납세자에게 사후적으로 입증 부담을 지우는 방식에 그칠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과 납세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이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감면 심사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개선 방향이 될 것이다.

## 제8415호 품목분류 해설 및 쟁점사항 연구

### - 공기조절기(동력구동식 팬과 온도와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으로,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

김 명 섭 | 더컨설팅그룹 THE관세연구원 원장(관세사)

#### [ 해설 요지 ]

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① 동력구동식 팬 또는 송풍기(blower)를 갖춘 것
- ② 공기의 온도(가열 또는 냉각)와 습도(가습 또는 제습), 두 가지를 모두 변화시킬 수 있을 것
- ③ 위 ①, ②의 기구가 함께 제시될 것

공기조절기는 크게 ① 실내기와 실외기가 단일 유닛에 내장된 일체형(Self-contained)과 ② 실내기와 실외기가 분리돼 냉매 배관과 전선으로 연결 작동하는 분리형(Split-system)으로 나눌 수 있다.

공기조절기는 증기 압축 냉동 사이클(Vapor Compression Refrigeration Cycle)을 기반으로 작동하며, 냉매가 압축기→응축기→팽창밸브→증발기를 순환하며 열을 실내에서 실외로 이동시킨다.

반전가능 열펌프(Reversible Heat Pump)는 냉·열순환 반전용 밸브(4-way valve)를 통해 냉방과 난방을 모두 수행하는 공기조절 시스템으로, 팬이 결합돼 있어 일명 ‘냉난방 겸용 에어컨’ 또는 ‘히트펌프’라고도 불린다.

이 호로 분류되는 주요한 기기로 중앙조절 시스템 에어컨, 바닥 고정식 일체형 에어컨, 창문 고정형 분리형 에어컨, 자동차용 에어컨, 산업용 공조시스템 에어컨, 반전가능 열펌프 등이 있다.

#### [ 주요 쟁점사항 ]

제8415.10 소호의 용어는 ‘Of a kind designed to be fixed to a window, wall, ceiling or floor, self-contained or “split-system”’로, 이를 ‘창문, 벽, 천장 또는 바닥에 고정되도록 설계된 것(일체형이나 분리형으로 한정한다)’이라고 번역하고 있으나, ‘창문, 벽, 천장 또는 바닥 등에 고정되도록 설계된 종류의 것(일체형이든 분리형이든 상관없으며, 도관이 있는 중앙조절시스템과 제8415.20 소호의 것은 제외한다)’으로 해설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8415.81 소호의 영문은 ‘Incorporating a refrigerating unit and a valve for reversal of the cooling/heat cycle(reversible heat pumps)’이며, 국문 번역은 ‘냉각유닛과 냉·열순환 반전용 밸브를 결합한 것(반전가능 열펌프를 포함한다)’이나, 원문의 괄호는 ‘설명’의 개념이므로 ‘냉각유닛과 냉·열 순환 반전용 밸브를 결합한 것(반전가능 열펌프)’으로 번역해야 한다.

제8415.82호는 ‘기타(냉각유닛을 결합한 것)’, 제8415.83호는 ‘냉각유닛을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소호를 규정하고 있으나, 두 소호 모두 기타(Other)의 개념이 아니므로 제8415.82 소호에서 규정한 ‘Other’는 오히려 불필요해 보이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꼭 Other 소호를 규정해야 한다면 제8415.89 소호를 잔여 소호(Other)로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을 적용해 제8415호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① 동력구동식 팬 또는 송풍기 (blower)를 갖출 것, ② 공기의 온도(가열 또는 냉각)와 습도(가습 또는 제습), 두 가지를 모두 변화시킬 수 있을 것, ③ 위 ①, ②의 기구가 함께 제시될 것을 충족해야 하므로 별도로 제시되는 실내기와 실외기는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을 적용해 제8415.90(부분품) 소호로 분류한다.

제8415호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공기의 습도를 조절하는 부분품은 제8415호로 분류하고 기계적으로 가습이나 제습하는 범용성의 독립된 기기는 제8479호로 분류하며, 일조의 중량이 20kg 이하의 전기식 공기 가습기(air humidifier)와 공기 제습기(dehumidifier)는 제8509호의 가정용 전기기기로 분류하며, 그 밖의 전기적으로 가습이나 제습하는 기기는 제8543호 등으로 분류한다.

## 1. 분류체계

### 1) 호의 구성

제8415호에는 공기조절기(Air Conditioner)를 분류하며, 동력구동식 팬과 온도·습도 변화 기구를 함께 갖춘 기기를 대상으로 한다. 습도만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되며, 보조적으로 청정기구(예: 제8421호)를 가진 기기도 있다.

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널리 사용된다.

- 주거용: 가정, 아파트, 원룸 등
- 상업용: 사무실, 호텔, 백화점, 식당, 극장 등
- 교통수단용: 자동차(제8415.20호), 버스, 철도 차량, 선박 등
- 공업용: 방직·종이·담배·식품공업 등 특수 온·습도 조건이 필요한 산업시설
- 특수 시설: 전산실(서버실), 데이터센터, 청정실, 의료시설, BSL(생물안전등급) 실험실 등

제8415호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① 동력구동식 팬 또는 송풍기(blower)를 갖출 것
- ② 공기의 온도(가열 또는 냉각)와 습도(가습 또는 제습), 두 가지를 모두 변화시킬 수 있을 것
- ③ 위 ①, ②의 기구가 함께 제시될 것

②의 장치는 최소한 다음 요소 중 하나를 갖춰야 한다.

- 공기 가열 장치(온수, 증기 또는 열풍관에 의해 작동하거나 전기 저항체 등에 의해 작동하는 것)와 공기 가습기(일반적으로 물 분무 장치로 구성됨) 또는 공기 제습기;
- 또는 냉수 코일이나 냉동장치의 증발기(이들 중 어느 것이든 공기의 온도뿐만 아니라 응축에 의해 습도도 변화시킴);
- 또는 공기의 습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별도의 장치를 갖춘 기타 형태의 냉각 요소

일부 경우에는 제습기가 흡습성 물질의 흡습 특성을 이용하기도 한다.

공기조절기는 크게 두 가지 구조 형태로 구분된다.

① 일체형(Self-contained)은 모든 구성요소(압축기·응축기·증발기·팬 등)가 하나의 단일 유닛에 내장된 형태다. 창문형(window type)과 벽 관통형(through-the-wall type)이 대표적이며, 실내기와 실외기의 구분이 없다. 구조가 단순해 냉매 누출 가능성이 작고 설치·이동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② 분리형(Split-system)은 실외기(응축기·압축기)와 실내기(증발기·팬)가 분리돼 냉매 배관과 전선으로 연결·작동하는 형태다. 도관(덕트)이 없으며, 개별 공간(방)마다 독립된 증발기를 설치해 냉방한다. 실내기의 형태에 따라 벽걸이형, 스탠드형, 천장형(카세트형), 바닥상치형 등으로 구분되며, 하나의 실외기에 여러 개의 실내기를 연결하는 멀티형(Multi-split)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 벽걸이형과 스탠드형 분리형 에어컨이 가장 보편적인 형태다.

공기조절기는 증기 압축 냉동 사이클(Vapor Compression Refrigeration Cycle)을 기반으로 작동한다. 냉매가 압축기→응축기→팽창밸브→증발기를 순환하며 열을 실내에서 실외로 이동시킨다.

- 압축기(Compressor): 냉매를 고온·고압 기체로 압축(실외기에 위치, 전력 소모의 90% 이상 차지)
- 응축기(Condenser): 고압 냉매를 액화하며 열을 실외로 방출
- 팽창밸브(Expansion Valve): 냉매를 저온·저압으로 감압
- 증발기(Evaporator): 냉매가 증발하며 실내 공기에서 열을 흡수(냉방 효과 발생)

이 과정에서 증발기의 냉각코일로 인해 공기 중 수증기가 응축돼 제습 효과도 발생한다. 응축수(condensate)는 드립 팬(drip pan)에 포집된다.

반전가능 열펌프(Reversible Heat Pump)는 냉·열순환 반전용 밸브(4-way valve)를 통해 냉방과 난방을 모두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팬이 결합돼 있다. 일명 ‘냉난방 겸용 에어컨’ 또는 ‘히트펌프’라고도 불린다.

냉방 사이클은 고온·고압 냉매 증기→반전 밸브→실외 코일(응축기 역할, 방열)→팽창밸브→실내 코일(증발기 역할, 흡열)→실내 공기 냉각→압축기로 순환한다.

난방 사이클은 냉·열순환 반전용 밸브 위치 변경→냉매 역방향 순환→실외 코일(증발기 역할, 외기에서 흡열)→실내 코일(응축기 역할, 실내에 방열)→실내 난방으로 순환한다.

이처럼 반전가능 열펌프(Reversible Heat Pump)는 공기조절기의 증기 압축 냉동 사이클(Vapor Compression Refrigeration Cycle) 기반과 유사하므로 제8415호로 분류된다.

반면 비가역식(non-reversible) 열펌프는 팬이 없고 제8418호로 분류되므로 반전가능 여부가 분류의 핵심 기준이 된다.

공기조절기는 압축기 제어 방식에 따라 정속형(ON/OFF)과 인버터형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 정속형: 실외기를 켜고 끄는 방식만 가능. 설정 온도 도달 시 실외기 정지, 이탈 시 재가동. 전력 소모가 상대적으로 크다.
- 인버터형: 압축기의 회전 속도를 연속적으로 가변 제어. 설정 온도에 근접할수록 출력을 낮춰 온도를 유지. 전력 효율이 높아 현재 생산되는 대부분은 인버터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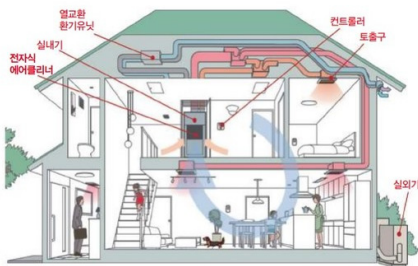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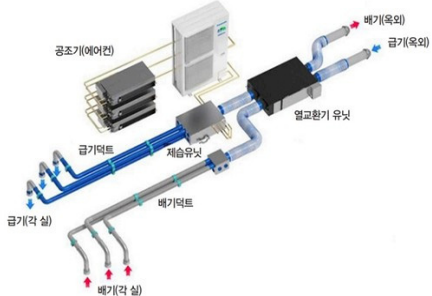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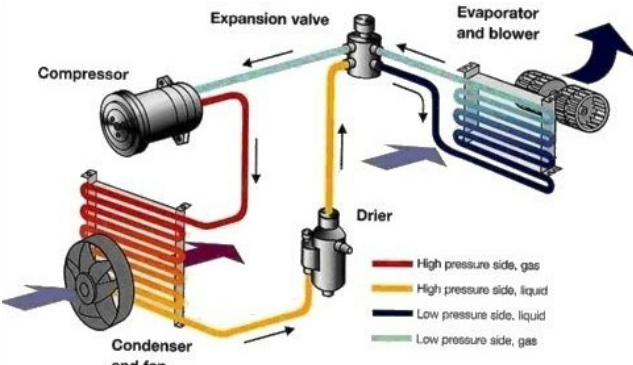

다음 품목은 제8415호에서 제외된다.

- 로리, 트레일러, 컨테이너 내의 섭씨 0도 이하 유지 목적 냉장유닛(보조 가열장치 포함): 제8418호
- 에어히터, 온풍분배기(신선/조절 공기 공급 가능한 것 포함): 제7322호
- 비가역식(non-reversible) 열펌프: 제8418호
- 공기조절기용 냉각기(chiller): 제8418호
- 온도 또는 습도 중 하나의 기능만 갖춘 기기(팬 결합 여부 무관): 제8479호, 제8516호 등

이 호로 분류되는 주요한 기기로는 중앙조절 시스템 에어컨, 바닥 고정식 일체형 에어컨, 창문 고정형 분리형 에어컨, 자동차용 에어컨, 산업용 공조시스템 에어컨, 반전가능 열펌프 등이 있다.

2) 제8415호의 다양한 기기

<p><b>공기조절기 냉동 사이클</b></p>	<p><b>에어컨 작동 원리</b></p>	<p><b>창문 고정식 분리형 에어컨</b></p>
<p><b>벽 고정식 일체형 에어컨</b></p>	<p><b>천장 고정식 분리형 에어컨</b></p>	<p><b>바닥 고정식 일체형 에어컨</b></p>
<p><b>다양한 형태의 고정식 에어컨</b></p>		
<p>Central Air Conditioner</p>	<p>Portable Air Conditioner</p>	<p>Cassette Air Conditioner</p>
<p>Split Air Conditioner</p>	<p>Window Air Conditioner</p>	<p>Floor Mounted Air Conditioner</p>

<p style="text-align: center;"><b>냉난방공조 시스템 구성도</b></p> 	<p style="text-align: center;"><b>냉난방공조 시스템</b></p> 
<p style="text-align: center;"><b>자동차용 에어컨 구조</b></p> 	<p style="text-align: center;"><b>4방 밸브방식의 냉난방 에어컨</b></p> 

### 3) 제8415 소호의 구성

제8415 소호는 호의 용어에 따른 그룹을 중심으로 종류, 형식, 용도 등에 따라 5단위 소호를 4개로 세분화하고, 기타(제8415.8)의 경우 6단위 소호를 좀 더 세분화했다. 소호의 구분에 대한 문제점은 쟁점사항에서 다룬다.

소호의 용어를 풀어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 제8415.10호: 창문, 벽, 천장 또는 바닥에 고정되도록 설계된 종류의 것(일체형이든 분리형이든 상관없으며, 도관이 있는 중앙조절시스템과 제8415.20 소호의 것은 제외한다)
- 제8415.20호: 자동차용(탑승자용으로 한정한다)
- 제8415.8호: 기타
- 제8415.81호: 반전가능 열펌프(냉각유닛과 냉·열순환 반전용 밸브를 결합한 것)

- 제8415.82호: 제8415.20(자동차용) 소호의 것과 제8415.10(고정형) 소호, 제8415.81(반전가능 열펌프) 소호의 것을 제외한 냉각유닛을 결합한 공기조절기(일체형이든 분리형이든 상관없다)
- 제8415.83호: 제8415.20(자동차용) 소호의 것과 제8415.10(고정형) 소호, 제8415.81(반전가능 열펌프) 소호의 것을 제외한 냉각유닛을 결합하지 않은 공기조절기
- 제8415.90호: 부분품(실내기와 실외기를 포함한다)

#### 4) 제8415 소호 주 해설

소호 제8415.10호는 창문·벽·천장이나 바닥에 고정되도록 설계된 공기조절기[‘일체형(self-contained)’이나 ‘분리형(split-system)’의 것이든 상관없다]를 포함한다.

##### ■ 제8415호 해설서

###### [소호해설]

‘고정(fixed)’이란 크기·중량·물리적 구조(예: 카스터나 손잡이의 유무)·상호 접속 등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대체적으로 다소 영구적인 방법으로 배치되거나 고정시킨 상태를 말한다. 일체식의 공기조절기는 단일 유닛 형태로서 모든 필요 요소를 둘러싸고 있으며 자체로서 완비되어 있다. 분리형의 공기조절기는 도관이 없으며 별개로 떨어져 있는 방과 같이 개개의 지역을 냉각시키기 위해 분리된 증발기를 사용한다. 실내용 열교환기 유닛은 다양한 장소(예: 벽·창·천장·바닥)에 장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소호에는 도관이 있는 중앙 조절시스템(냉각된 공기를 증발기로부터 냉각 대상 지역으로 보내기 위해 도관을 사용한다)을 제외한다(보통 제8415.82호).

소호 제8415.20호에는 주로 사람을 태우는 모든 종류의 자동차용 공기조절기를 포함하며 그 밖의 자동차의 경우에 운전실이나 사람을 태우는 곳의 공기 조절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소호 제8415.90호는 별도로 제시된 제8415.10 소호의 분리형 공기조절기의 실내기(indoor unit)와 실외기(outdoor unit)를 포함한다. 이 장치들은 전선과 구리관(이 관을 통해 냉매가 실내기와 실외기 사이를 순환한다)에 의해 연결되도록 고안돼 있다.

#### 5) 제8415호 HSK의 구성

소비전력(11kW)을 중심으로 구분하고 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11kW 이상은 공조기(산업용), 11kW 미만은 가정용(흔히 말하는 에어컨)으로 생각하면 된다. 그 외 형태와 용도를 중심으로 세분화했다. 소호의 구분 및 해석에 따라 HSK의 분류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2. 관련 규정

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동력구동식 팬과 온도와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를 분류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 ■ 제16부 주 제2호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15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
-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

### ■ 제7322호의 용어

철강으로 만든 방열기(중앙난방용으로 한정하고, 전기가열식은 제외한다)와 이들의 부분품, 동력구동식 송풍기를 갖춘 공기가열기와 온풍배분기(냉풍이나 조절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배분기를 포함하고, 전기가열식은 제외한다)와 이들의 부분품

### ■ 제16부 주 제3호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

... <중략> ...

제16부의 주 제3호는 복합기계가 어느 특정 호에 분류되는 경우[예를 들면, 어떤 형태의 공기조절기(제8415호)]에는 원용(援用)할 필요가 없다.

### ■ 제8414호의 용어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 ... <후략>

### ■ 제8418호의 용어

<전략> ... 열펌프(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

### ■ 제8421호의 용어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 ■ 제8479호의 용어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 3. 주요 쟁점사항

제8415호의 분류와 관련해 주요 쟁점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제8415.10 소호의 더 정확한 번역과 범주는?
- 2) 제8415.81 소호 번역의 문제점과 보다 더 정확한 번역은?
- 3) 제8415.82 소호와 제8415.83 소호 체계의 문제점은?
- 4) 실내기의 제8415.83 소호와 제8415.90 소호의 경합과 문제점은?
- 5) 관세율표상 제습장치와 가습장치의 분류는?
- 6) 그 밖에 제8415호와 경합하는 물품과 세번은?

#### 1) 제8415.10 소호의 더 정확한 번역과 범주는?

제8415.10 소호의 용어는 ‘Of a kind designed to be fixed to a window, wall, ceiling or floor, self-contained or “split-system”이다. 이를 ‘창문, 벽, 천장 또는 바닥에 고정되도록 설계된 것(일체형이나 분리형으로 한정한다)’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호나 소호의 용어는 더욱 넓게 해석해야 한다. 그래야 국제 간 거래되는 수많은 종류의 물품을 한정된 호나 소호의 코드에 분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호나 소호의 용어를 살펴보면, 그 범주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매우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부의 주, 류의 주, 호의 용어, 소호의 용어에 많이 사용되는 주요한 제한 표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only / solely / exclusively: “오직 / 오로지 / 독점적으로(가장 강력)”
2. not include / excluding / except / other than: 배제 표현
3. provided that / subject to: 조건부 제한
4. consisting wholly of: “오직 ~로 이루어진”
5. must not be included: “포함되지 않아야 함(배제 주식)”

그러나 관세율표 국문 번역을 살펴보면 이러한 표현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곳에 “~한정한다”라고 번역하고 있다. 물론 문맥상 제한하는 표현이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호의 범주나 소호의 범주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영문이 원문이고 국문은 참조 문구라는 점에서 원문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번역함이 바람직하다.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Of a kind designed to be fixed to a window, wall, ceiling or floor, self-contained or “split-system”은 ‘창문, 벽, 천장 또는 바닥에 고정되도록 설계된 종류의 것(일체형 또는 ‘분리형 시스템’)이다. 좀 더 살펴보면, “self-contained” or “split-system”의 “or”는 나열적, 선택적 연결어이므로 일체형뿐 아니라 분리형도 모두 포함한다는 의미다. 즉, “일체형이든 분리형이든 상관없다”라는 의미다.

제8415.20 소호(Of a kind used for persons, in motor vehicles)의 국문 번역도 ‘자동차용(탑승자용으로 한정한다)’이 아닌 ‘자동차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종류의 것’으로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8415.20 소호 해설에도 “이 소호에는 주로 사람을 태우는 모든 종류의 자동차용 공기조절기를 포함하며 그 밖의 자동차의 경우에 운전실이나 사람을 태우는 곳의 공기 조절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소호의 범주를 좀 더 확대 해설하고 있다.

제8415.10 소호와 제8415.20 소호의 구분 기준이 서로 달라서 중복분류의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① 제8415.20 소호의 자동차용의 에어컨이 ② 제8415.10 소호에 해당하는 벽 고정식 또는 창문 고정식이 있다면 어디로 분류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필자의 견해는 제8415.20 소호의 범주가 더 구체적이므로 제8415.20 소호(자동차용)로 우선 분류해야 한다고 본다.

제8410.10 소호 해설에 ‘고정’의 정의와 ‘설치장소’의 범위, 그리고 “이 소호에는 도관이 있는 중앙 조절시스템(냉각된 공기를 증발기로부터 냉각 대상 지역으로 보내기 위해 도관을 사용한다)을 제외한다”라고 제외 범주를 해설하고 있다.

위 내용들을 종합해 최종적으로 제8415.10 소호의 용어는 ‘창문, 벽, 천장 또는 바닥 등에 고정되도록 설계된 종류의 것(일체형이든 분리형이든 상관없으며, 도관이 있는 중앙조절시스템과 제8415.20 소호의 것은 제외한다)’으로 해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제8415.10 소호의 용어에 규정한 ‘고정’의 정의는 소호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크기·중량·물리적 구조(예: 카스터나 손잡이의 유무)·상호 접속 등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 대체적으로 다소 영구적인 방법으로 배치되거나 고정시킨 상태를 말하므로 ‘절대적’이나 ‘영구적’인 개념이 아니다. 아래의 WCO 사례에서처럼 설치 장소에 단단하게 고정하거나 콘크리트로 굳히는 것이 아닌 필요에 따라서는 약간의 이동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그렇다고 이동식을 포함하는 개념은 아니다).

■ WCO의 ‘천장용 분리식 공기조절기’의 분류 사례

<b>품명</b>	천장용 분리식 공기조절기
<b>물품 설명</b>	이 제품은 다음으로 구성돼 있다.  (i) 실내기 천장에 설치하도록 설계됐으며 열교환기 및 동력구동식 송풍기가 하나의 하우징에 장치돼 있다.  (ii) 실외기 냉각식 압축기와 동력구동식 송풍기를 갖춘 열교환기가 하나의 하우징에 장치돼 있다.  위의 두 기기는 모두 전기선 및 구리관으로 서로 연결하도록 설계됐다.
<b>적용 규정</b>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 제3호) 및 제6호 적용(제8415.10호)

■ WCO의 ‘플로어 타입 분리형 공기조절기’의 분류 사례

<b>품명</b>	플로어 타입 분리형 공기조절기
<b>물품 설명</b>	<p>다음으로 구성돼 있다.</p> <p>(i) 스탠드형 실내기 열교환기(증발기)와 동력구동식 송풍기가 하나의 하우징에 구성돼 있다. 이 장치는 바닥이나 벽에 설치하도록 설계돼 있으나 설치장소에 단단하게 고정시키거나 콘크리트로 굳히는 것은 아니다.</p> <p>(ii) 실외기 냉각식 압축기, 열교환기(콘덴서), 동력구동식 송풍기가 하나의 하우징에 구성돼 있다. 이 장치는 바닥이나 스틸바에 설치하거나 고정하도록 설계돼 있다.</p> <p>위의 두 장치는 전선 및 냉매가 흐르는 관으로 서로 연결하도록 설계돼 있다.</p>
<b>적용 규정</b>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적용(제8415.10호)

2) 제8415.81 소호 번역의 문제점과 보다 더 정확한 번역은?

제8415.81 소호의 영문은 ‘Incorporating a refrigerating unit and a valve for reversal of the cooling/heat cycle(reversible heat pumps)’이며, 국문 번역은 ‘냉각유닛과 냉·열순환 반전용 밸브를 결합한 것(반전가능 열펌프를 포함한다)’이다.

그러나 원문의 괄호는 ‘대상’의 개념이며, ‘포함’의 개념이 아니다. 다시 말하자면 제8415.81 소호의 물품이란? ‘반전가능 열펌프’를 말한다. 물론, 냉각유닛과 냉·열순환 반전용 밸브를 결합한 것은 제8415.81 소호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반전가능 열펌프’도 이 소호로 분류되므로 결국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는 있다. 그러나 다른 호에도 이와 같은 해석을 할 우려가 있어서 바로 해석함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제8415.81 소호는 ‘냉각유닛과 냉·열 순환 반전용 밸브를 결합한 것(반전가능 열펌프)’으로 번역해야 한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반전가능 열펌프는 냉각유닛과 냉·열 순환 반전용 밸브를 결합한 것을 말한다”의 의미다.

3) 제8415.82 소호와 제8415.83 소호 체계의 문제점은?

제8415.8 5단위 소호는 제8415.10 소호와 제8415.20 소호와 같은 특정 소호의 물품을 제외한 그 밖의 것(Other)이 분류되는 잔여 소호다. 잔여 소호에서도 제8415.81 소호는 ‘반전가능 열펌프’가 분류되는 특정 잔여 소호다.

소호 체계는 제정 목적상 특정 소호를 우선 규정하고 최종적으로 잔여 소호를 규정한다. 그러나 제8415호는 다음과 같이 제8415.82 소호는 잔여 소호며, 제8415.83 소호는 특정 소호다.

제8415.82호: 기타(냉각유닛을 결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8415.83호: 냉각유닛을 결합하지 않은 것

이 두 소호는 소호 해설에서 설명한 것처럼 아래의 의미로 규정한 것이므로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 다만 제8415.82 소호는 제8415.10 소호 해설에서 설명한 대로 “냉각유닛을 결합한 것으로 한정한다”라는 국문 번역의 오류이며 ‘냉각유닛을 결합한 것’이 바른 번역이다. 또한 냉각유닛을 결합한 공기조절기의 특성상 “일체형이든 분리형이든 상관없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b>제8415.82호</b>	제8415.20(자동차용) 소호의 것과 제8415.10(고정형) 소호, 제8415.81(반전가능 열펌프) 소호의 것을 제외한 냉각유닛을 결합한 공기조절기(일체형이든 분리형이든 상관없다.)
<b>제8415.83호</b>	제8415.20(자동차용) 소호의 것과 제8415.10(고정형) 소호, 제8415.81(반전가능 열펌프) 소호의 것을 제외한 냉각유닛을 결합하지 않은 공기조절기

그리고 두 소호 모두 기타(Other)의 개념이 아니므로 제8415.82 소호에서 규정한 ‘Other’는 오히려 불필요해 보이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꼭 Other 소호를 규정해야 한다면 제8415.89 소호를 잔여 소호(Other)로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WCO에서는 이동식의 일체형 공기조절기는 자동차용도 아니고 고정형도 아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제8415.82 소호로 분류 결정했다.

■ WCO의 ‘이동식의 일체형 공기조절기’의 분류 사례

<b>품명</b>	이동식의 일체형 공기조절기
<b>물품 설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개의 동력구동식 송풍기, 증발기, 응축기, 압축기가 하나의 하우징에 구성돼 있다.</li> <li>- 이 기기는 이동이 용이하도록 4개의 카스터를 부착했고 2개의 손잡이가 있다.</li> <li>- 이 기기는 창이나 벽을 통과해서 따뜻한 공기를 내보내기 위한 유연성 있는 배기호스를 부착할 수 있다.</li> </ul>
<b>적용 규정</b>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 제3호) 및 제6호 적용(제8415.82호)



#### 4) 실내기의 제8415.83 소호와 제8415.90 소호의 경합과 문제점은?

제8415호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① 동력구동식 팬 또는 송풍기(blower)를 갖출 것
- ② 공기의 온도(가열 또는 냉각)와 습도(가습 또는 제습), 두 가지를 모두 변화시킬 수 있을 것
- ③ 위 ①, ②의 기구가 함께 제시될 것

호의 용어에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는 의미는 “습도를 조절할 수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독립된 습도조절기가 없지만 습도는 조절된다는 의미다. 이런 물품도 ① 동력구동식 팬 또는 송풍기(blower)와 ② 공기의 온도(가열 또는 냉각) 변화 장치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제8415.83 소호(냉각유닛을 결합하지 않은 공기조절기)의 기기는 공기의 온도 변화 장치가 없다는 의미로 보인다는 점에서 제8415호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공기조절기(소위 에어컨)는 대부분 실내기다. 실내기는 보통 팬과 증발기로 구성된다. 실내기의 핵심인 증발기는 공기의 온도를 변화시키는 동시에 응축으로 습도를 변화시킨다. 실내기만 별도로 제시되는 경우에 제8415.83 소호에 분류되는지를 우선 검토해야 하는데 필자의 견해는 실내기는 제8415.83 소호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실내기는 제8415호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제16부 주 제2호 가목(특정한 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제16부 주 제2호 나목(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WCO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을 적용해 실내기와 실외기를 제8415.90(부분품) 소호로 분류 결정했다.

#### ■ WCO의 ‘압축식 분리형 공기조절기의 실내기’의 분류 사례

<b>품명</b>	압축식 분리형 공기조절기의 실내기
<b>물품 설명</b>	증발기 열교환 코일, 실내로 공기를 불어 넣기 위해 공기를 증발기 열교환 코일을 통과해 끌어들이는 모터로 작동하는 전기 팬, 공기필터와 자동 온도조절 장치 및 제어반으로 이뤄져 있으며, 동일한 하우징 안에 결합돼 있다. 이 실내기는 냉매가 순환하는 구리관과 전기선에 의해 실외기와 연결되도록 설계 제작된 것이다.
<b>적용 규정</b>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 제2호 나목) 및 제6호 적용(제8415.90호)

■ WCO의 ‘압축식 분리형 공기조절기의실내기’의 분류 사례

<b>품명</b>	압축식 분리형 공기조절기(냉방만 가능)용 실외 냉각 유닛
<b>물품 설명</b>	압축기, 냉각기 열교환 코일, 열을 배출하도록 하기 위해 공기를 냉각기 열교환 코일을 통과해 끌어들이는 모터로 작동하는 전기 팬 및 유닛의 제어 및 보호용의 기타 구성요소들로 이뤄져 있으며, 동일한 하우징 안에 장착돼 있다. 이 유닛은 전기선과 냉매가 순환하는 구리관에 의해 하나 이상의 실내 증발유닛에 연결되도록 만들어져 있다.
<b>적용 규정</b>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 제2호 나목) 및 제6호 적용(제8415.90호)

■ WCO의 ‘압축식 가역 냉난방 분리형 공기조절기용 실외 냉각 유닛’의 분류 사례

<b>품명</b>	압축식 가역 냉난방 분리형 공기조절기용 실외 냉각 유닛
<b>물품 설명</b>	압축기, 냉각기 열교환 코일, 열을 배출하도록 하기 위해 공기를 냉각기 열교환 코일을 통과해 끌어들이는 모터로 작동되는 전기 팬, 사이클 전환을 위한 4방향 밸브(4-way valve) 및 유닛의 제어 및 보호용의 기타 구성요소들로 이뤄져 있으며, 동일한 하우징 안에 장착돼 있다. 이 유닛은 전기선과 냉매가 순환하는 구리관에 의해 하나 이상의 실내 증발유닛에 연결되도록 만들어져 있다.
<b>적용 규정</b>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 제2호 나목) 및 제6호 적용(제8415.90호)

다만, 2010년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제8415.83 소호로 분류한 사례가 있으며 온·습도를 살수장치로 조절하는 장치는 냉각유닛으로 보지 않았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b>시행기관</b>	관세평가분류원 2010년 제3회 품목분류협의회
<b>결정 세번</b>	제8415.83-0000호
<b>품명</b>	Air Conditioner
<b>물품 설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품 개요</li> <li>방적공정 중 공기조화용(Air Conditioning)으로서 현장 공기의 온도 및 습도를 현장 내에 설치된 센서가 자동으로 감지해 수치제어 방식으로 항온(±1℃), 항습(±2.5%RH)을 조절함과 동시에 현장 공기 중의 먼지 등 이물을 제거해 주는 물품</li> <li>◦ 상세 설명</li> <li>① Air Conditioning Plant</li> <li>② Control Damp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resh Damper, Return Damper, Relief Damper로 구성</li> <li>- 공조실 내부로 유입되는 공기를 조절하는 장치로 방적공장 내부에 설치된 센서에 의해 자동으로 개폐의 정도를 조절</li> </ul> </li> <li>③ Air Was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istributor, Spray Pump Motor, Spray Pipe, Eliminator로 구성돼 있으며</li> <li>- 공조실 내부로 유입된 공기 중의 혼탁하고 미세한 먼지를 걸러주는 기능, 신선하고 차가운 공기를 불어 넣기 위해 물을 아주 작은 입자로 분사하는 기능 및 공기 중의 미세한 물 입자를 걸러주는 장치로 구성돼 있으며 방적공장 내부에 설치된 센서에 의해 자동으로 물의 분사량을 조절</li> <li>- 온·습도는 살수장치로 조절하고 공기 가열기능은 없으며, 공기냉각 기능은 지하수(19℃)</li> </ul> </li> </ul>

	<p>를 사용해 냉각하며, 2공조 및 5공조에는 여름철에 지하수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냉각기(국내조달 물품) 사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iffus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력구동식 Fan과 Air Outlet으로 구성</li> <li>- 공기를 현장으로 불어 넣기 위한 기능이며, 동력구동식 Fan은 수입, Air Outlet은 국내 조달 물품임</li> </ul> </li> <li>㉡ 청정 Pla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ibre Depositing Plant 3세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eturn Grill, Rotary Pre-Filter Unit, Rotary Air Filter Unit, Return Fan으로 구성돼 있음.</li> <li>- 방적 공정 중 발생하는 모든 풍면(먼지, 이물질 등)을 집진시키는 설비로서 자동으로 연속해 수거함.</li> </ul> </li> <li>㉠ Automatic Waste Removal Syste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방기 Pneuma 2대, 코마 Lap 설용 1대</li> <li>- 기계에서 발생한 풍면(뉴마면: Pneumafil) 수거장치</li> </ul> </li> <li>㉠ Central Dust Disposal System 1세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개 공조 및 3개 집진실의 Dust Collector에 집진된 설물을 Duct로 연결해 중앙에서 최종 집진</li> </ul> </li> </ul> </li> <li>㉢ 공조 Control System: 공조 설비의 자동제어 컨트롤 시스템</li> </ul>
<p><b>결정 사유</b></p>	<p>관세율표 16부 주 제4호에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거나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 또는 기타의 장치에 의하여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p> <p>관세율표 제8415호에는 ‘공기조절기(동력 구동식의 팬과 온도 및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에 한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가 분류됨.</p> <p>관세율표 해설서 제8415호에 “이 호에는 실내의 온도 및 습도를 요구되는 조건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기가 포함된다. 이러한 기기에는 공기를 청정하기 위한 기구를 갖춘 것도 있다. 이들 기기는 사무실 등에서 공기를 조절(온도 및 습도)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또한 공기의 온도와 습도가 특별한 조건을 필요로 하는 공업용 시설(예: 섬유·지류·연초 및 식품공업)에서도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고</p> <p>또한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는 기계만이 분류된다. (1) 동력구동식의 팬 또는 송풍기를 갖추고 있고, (2) 공기의 온도(가열 또는 냉각기구 또는 두 가지 기구를 다 갖춘 것)와 습도(가습 또는 건조기구 또는 두 가지 기구를 다 갖춘 것)의 두 가지를 다 변화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을 것 및 (3) 상기 (1) 및 (2)에서 언급한 기구들이 함께 제시될 경우”라고 설명하고 있음.</p> <p>본 물품은 방적공장 내부에 설치된 센서가 온도 및 습도를 자동으로 감지해 수치제어 방식으로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흡입해 방적공장 내부의 공기를 일정한 온도와 습도로 유지시킴과 동시에 방적공장 내부의 미세한 먼지 등으로 혼탁해진 공기를 외부로 배출함으로써 방적공장 내부의 공기를 조절하는 물품으로서</p> <p>외부의 신선한 공기 흡입→흡입된 공기의 냉각 및 가습→방적공장 내부로 송풍→방적공장 내부 공기 배출 및 집진까지가 하나의 Cycle로 전체가 공기조절기인 설비이고, 공기를 순환시</p>

키는 동력 구동식 송풍기가 공기의 가습장치와 밀폐된 콘크리트 벽으로 일체로 결합되도록 설치되며,  
또한 동 설비는 동력구동식의 팬을 갖추고 있고, 외부로부터 흡입된 공기에 차가운 물을 분사해 공기의 온도를 냉각시키는 기능과 공기에 습도를 가습하는 기능을 동시에 갖추고 있고, 해당 기구들이 함께 제시됐으며 냉장유닛은 결합하지 않았음.

따라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 제4호 및 제8415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동력 구동식의 팬과 온도 및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추고 있고 냉장유닛을 결합하지 않은 공기조절기(제8415.83-0000호)로 분류한다.

### 5) 관세율표상 제습장치와 가습장치의 분류는?

제8415호의 규정상 공기조절기에는 습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공기의 제습장치나 가습장치가 결합돼 있다. 그러나 공기 중의 습도를 독립적으로 조절하는 장치가 부착돼 있지 않았지만, 응축으로 습도를 변화시키는 것도 습도를 조절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제습장치나 가습장치가 필수 불가결한 요소는 아니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제8479호 해설서에 그 유명한 “이 호의 적용에 있어서 다음의 것은 ‘고유의 기능(individual function)’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 (A) 기계의 기능이 다른 어떤 기계나 기기로부터 별개로나 독립하여 작용될 수 있는 기계(전동기나 그 밖의 구동장치가 부착되어 있는지에 상관 없다) 예: 공기의 가습(humidification)이나 제습(dehumidification)은 다른 어떤 기계나 기기로부터 독립하여 작용되는 기계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고유의 기능인 것이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제시되는 가습기와 제습기는 제8479호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러 번 언급했지만 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는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제8415호의 습도를 조절하는 장치는 제8415호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 ① 동력구동식 팬 또는 송풍기(blower)를 갖춘 것
- ② 공기의 온도(가열 또는 냉각)와 습도(가습 또는 제습), 두 가지를 모두 변화시킬 수 있을 것
- ③ 위 ①, ②의 기구가 함께 제시될 것

따라서 제8415호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공기의 습도를 조절하는 부분품은 제8415호로 분류하고, 기계적으로 가습이나 제습하는 범용성의 독립된 기기는 제8479호로 분류하며, 일조의 중량이 20kg 이하의 전기식 공기 가습기(air humidifier)와 공기 제습기(dehumidifier)는 제 8509호의 가정용 전기기기로 분류하며, 그 밖의 전기적으로 가습이나 제습하는 기기는 제8543호 등으로 분류한다.

6) 제8415호와 경합하는 물품과 세번은?

제7322호의 용어에 ‘철강으로 만든 방열기(중앙난방용으로 한정하고, 전기가열식은 제외한다)와 이들의 부분품, 동력구동식 송풍기를 갖춘 공기가열기와 온풍배분기(냉풍이나 조절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배분기를 포함하고, 전기가열식은 제외한다)와 이들의 부분품’을 규정하고 있다.

제7322호의 ‘동력구동식 송풍기를 갖춘 공기가열기’는 제8415호의 공기조절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기계적인 구조가 아니라는 점에서 제7322호로 분류한다.

제8418호의 용어에는 ‘열펌프’를 규정하고 있다. 제8418호의 열펌프는 비가역(non-reversible)의 열펌프로 주로 빌딩의 난방용이나 가정의 온수 공급용으로 사용되는 반면, 제8415호의 ‘열펌프’는 모터(motor) 구동용 팬과 온도와 습도의 양쪽을 변화시키는 장치로 구성되는 가역(reversible) 펌프로 공기조절기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공기조절기의 일종이다.

제8421호의 용어에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를 규정하고 있다. 제8415호의 공기조절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공기여과기나 공기청정기가 별도로 제시될 때는 제16부 주 제1호 가목에 따라 제8421호로 분류한다.

※ 이 글에서 제기한 의견 등은 필자가 소속한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제0307호vs.제0309호’ 조개관자의 HS Code

이 영 주 | 중앙관세분석소



품목분류 사례와 관련 없음

조개관자는 주로 가리비나 키조개의 관자가 이용된다. 요즘은 원상의 관자 이외에도 성형관자나 둥근관자 등으로 불리는 관자를 이용하는데 이는 작은 관자 등을 모아 점결제 등과 혼합, 압축해 펠릿 모양으로 만든 것이다.

HS 2022에서는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무척추동물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은 제0307호에서 분리돼 제0309호에 별도로 신설됐으며, 이제 조개관자는 사용한 조개의 종류뿐만 아니라 제조 방법에 따라서도 세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면, 키조개 관자로 만든 펠릿(냉동)을 HS 2017까지는 제0307.92-1000호의 냉동한 개이지살(관자)로 분류했지만, HS 2022에는 제0309.90-2000호에 분류한다. 참고로 원상의 키조개 관자는 제0307.92-1000호에 그대로 분류된다.

제0307.92-1000호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이 세번으로 신고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번 확인이 필요하다.

**[세번 정정 이유]** 본 물품은 조개관자를 분쇄한 것에 점결제를 첨가한 후 원형의 펠릿으로 성형해 냉동한 것으로 제0307.92-1000호로 신고했다.

관세율표 제0307호에는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 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된다.

관세율표 제0309호에는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무척추동물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0309.90-2000호에는 ‘연체동물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다.

관세율표 제3류 주 제2호는 “이 류에서 ‘펠릿(pellet)’이란 직접 압축하거나 소량의 점결제를 첨가하여 응결시킨 물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했으며, 같은 류 주 제3호에서 “제0305호부터 제0308호까지는 식용에 적합한 고운 가루,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은 포함하지 않는다(제0309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 물품은 연체동물인 조개의 관자를 분쇄한 것에 소량의 점결제를 첨가한 후 원형 펠릿상으로 성형해 냉동한 것으로서 관세율표 제3류 주 규정에 따라 제0307호에서 제외되는 물품이다.

따라서, 본 물품은 연체동물로 만든 식용의 펠릿을 냉동한 것이므로 제0309.90-2000호에 정정 분류했다.

신고품명	신고세번(세율)	회보품명	정정세번(세율)
Frozen adductors of scallop	0307.92-1000 (FCN1 20%)	Pellets of molluscs	0309.90-2000 (FCN1 8%)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신간 도서안내

## 2026 개정판 관세법령집

- ☑ 관세 행정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수록 법령 개편  
「행정기본법」·「행정절차법」 등 신규 수록
- ☑ 2026년 4월 1일까지 최신 개정 법령 반영  
최신 법조문과 관련 고시·판례 통합 업데이트
- ☑ 법령 구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법·시행령·시행규칙 3단 구성



## 2026 HS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

### 관세·무역 실무를 위한 가장 확실한 기준

- ☑ 2026년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 및 FTA 연차세율 반영
  - 22개 FTA(CEPA, SECA 포함), WTO 협정 등 반영
  - 한-UAE CEPA, 한-에콰도르 SECA 신규 수록
  - 한-EU, 한-영국 FTA 상·하반기 세율 반영
- ☑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및 간이징액환급률표 개정사항 수록
- ☑ 통합공고 및 기타세율 규정, 내국세법 등 주요 개정사항 반영



### 도서 구매 문의 안내

**구매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smartstore.naver.com/kctdi](https://smartstore.naver.com/kctdi)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더욱 다양한 도서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TEL (02)3416-5112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지식사업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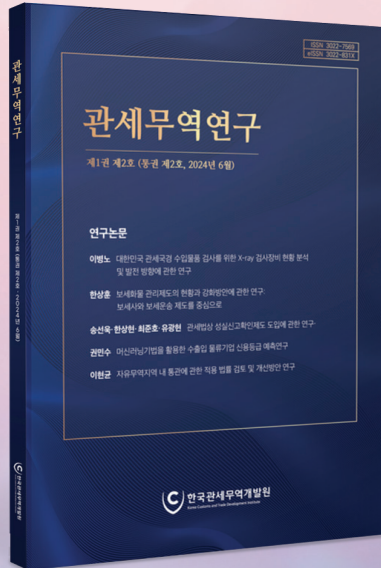


후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도서 판매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관세 무역 분야 학술·정책 발전을 선도하는 전문 학술지

# 「관세무역연구」

(Korea Customs Review)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관세행정 및 무역 정책 수립·발전에 기여할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관련 학술활동 진흥을 도모하고자 전문 학술지 「**관세무역연구(Korea Customs Review)**」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 ✓ **매년 4회(3·6·9·12월) 발간**
- ✓ **게재 결정된 논문 투고자에게 연구지원금 지급**
- ✓ **무역 관련 이론·정책 등 연구 분야**  
· 무역실무, 무역이론, 국제경영 등
- ✓ **관세행정 및 제도 관련 연구 분야**  
· 통관, 심사, 조사, 국제협력, 정보데이터 등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논문모집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